

1. 국가지정문화재 문화재보호구역 추가지정
- 가. 대상문화재 : 보물 제984호 「영동 신항리 석조여래상존입상」
- 소재지 : 충북 영동군 용선면 신항리 135-1
- 나. 문화재보호구역 추가지정 내용(지번별 면적조사 별첨)
- 당초 보호구역 : 신항리 135-1면지 1필지 405.2㎡(지정면적 1.8㎡(포함))
- 변경 보호구역 : 신항리 148-2면지 등 2필지 1,697.2㎡(증 1,292㎡)
- 다. 추가지정 사유
- 추가지정 예고문자는 석조여래상존입상과 인접한 필지로 문화재 보존관리와 경관보호를 위하여 문화재보호구역으로 확대지정하여 관리하고자 함
2. 지정예고일 : 관보공고일
3. 지정예고기간 : 관보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4. 특기사항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문선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영동군 문화체육과) 또는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게시판 「문화재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연락처

○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91-4915/팩스 042-491-4939

- 주소(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30번지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 영동군 문화체육과 : 전화 043-740-3203 /팩스 043-740-3209

영동 신항리 석조여래상존입상 문화재보호구역 추가지정 지면조서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지정면적(㎡)	소유자	비고
충북 영동군 용선면 신항리	135-1	임	4,231	405.2	경승원	기존
	148-2	담	1,292	1,292	영구관	추가
합 계			5,523	1,697.2		

●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3-1호

유전자재조합식품 승인

「식품위생법」 제18조 및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안전성 평가 심사 등에 관한 규정(식약청 고시 제 2009-196호)」에 따라 후대교배종 유전자재조합 면화 (GHB614xLLeotton25x15965)와 유전자재조합 식물원가물 리보플라빈의 안전성 평가자료를 심사한 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어 승인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9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유전자재조합식품 승인 목록

1. 승인 목록

대상품목	신청자	개발자	개발국	승인번호	승인일
후대교배종 유전자재조합 면화 GHB614xLLeotton25x15965	바이엘크롭사이언스(주)	Bayer CropScience	미국	제2013-1호	2013. 1.3
유전자재조합 식물원가물 리보플라빈 (상품명 : Roboflavin Universal)	디에스엠플루트리산코리아(주)	DSM Nutritional Products Ltd.	스위스	제2013-2호	2013. 1.3

2. 승인 조건
- 인체 건강 상 새로운 위해요인이 발견되었다는 등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재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 중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3-1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통지서 공시송달

도로법 제59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동법 제101조 및 결사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해당종별(등기)수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편인 불명 및 더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무제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3년 1월 9일

중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문제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3.01.08. ~ 2013.01.22. (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 10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4조에 별표5까지 함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중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양면 대천리 1651)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을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결사위반행위규제법 제 18조에 따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액기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결사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아래 납부금액은 본 금액에서 20% 감경된 금액입니다.)
-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연락처,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 결사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3조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제남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해 의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아니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후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연락처,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의해 처리되며, 지정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제 제남처분의 해에 따라 제선일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지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